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2. 11 선고 2020가단346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와 망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 D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세입세출 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C,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2. 12. 21. F(그 후 'G'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하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45,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망인은 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 대천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망인은 2020. 1. 13.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20. 2. 21.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6,443,2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망인은 2020. 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C, D가 2020. 4. 27.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을 각 1/2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4) 원고는 2020. 8.경 C, D를 상대로 망인에 대한 구상금의 상속채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20차전116616)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20. 9. 3. C, D에게 송달되고 2020. 9. 18. 확정되었다.

나. 망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망인은 2019. 11. 5.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장 부지와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6. 피고에게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보령시 H아파트 I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335,275,980원, H 아파트의 시가는 215,000,000원이다.

3) 반면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631,431,969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채권자	채무액(2019. 11. 5.)	비고
기업은행	22,500,000원	원고의 보증원금 포함 (갑 제18호증의 4)
	851,669원	신용카드 (갑 제18호증의 3)
J조합	215,892,415원	금융거래정보 회신
보령세무서	1,469,000원	과세자료정보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1,338,560원	사실조회 회신
K카드	7,032,730원	갑 제14호증의 5, 6
L	6,288,947원	갑 제15호증의 5
충남신용보증재단	50,000,000원	갑 제16호증의 2
M	35,988,648원	갑 제17호증의 4
N	30,000,000원(원금)	금융거래정보 회신
O	22,070,000원	
P(주)	18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갑 제20호증)
A	58,000,000원	피고 주장
합계	631,431,969원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20. 8. 12. Q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020. 9. 16.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액 69,975,013원 전액을 배당하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액 16,200,000원 중 8,226,0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 K은행, J조합, 충남신용보증재단, N, O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P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보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약 7년 전인 2012. 12.경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운영하던 업체와 관련하여 2019. 7.부터 2020. 1.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연체하고, 2019. 10.경 보령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1,469,000원을 체납하는 등 재정이 악화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2달 남짓 지난 2020.

1. 13.경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550,275,98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35,275,980원 + H 아파트가액 215,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합계 631,431,969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운영하던 사업장인 G 대천점의 영업가치가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을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가치'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인지, 또는 비품 등 유체동산인지, 영업 기대수익이나 브랜드가치와 같은 무형의 자산인지 특정하지도 않았고, 그 가액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가능한 실질적인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망인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친구로서 2010. 10. 말경 급하게 쓸 목돈을 빌려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2010. 10. 30.부터 2010. 11. 7.까지 사이에 합계 58,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10. 11. 5.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망인의 채무 내역이나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선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히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기초해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및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30. 배우자인 Q 명의의 R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2019. 11. 5. Q 명의의 다른 R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망인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9. 11. 7.에는 다시 앞서 본 Q의 R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당시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3호증의 일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로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는 망인에게 58,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차용증 등 이와 관련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2019. 11. 7. 망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 부분 외에 나머지 금액 부분은 위 송금계좌와는 다른 예금계좌에서 피고가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정만 나타날 뿐, 그 돈이 실제로 망인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2019. 11. 7.자로 송금한 돈의 명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J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이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은행과 캐피탈 대출채무나 신용카드대금, 임차보증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로부터 2019. 11. 5. 송금받은 50,000,000원을 위와 같은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채무, 개인채무 등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망인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용도를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피고로서도 망인이 당시 여러 금융기관이나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4)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G 대천점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관계로 망인의 변제자력을 의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망인이 당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당시 합계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보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이 운영하던 G 대천점은 계속하여 매출액과 매입액 모두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는 등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5) 한편으로 피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을 통해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는 채권액 69,975,013원 전액을, 원고에게는 채권액 16,200,000원 중 8,226,0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확정된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C, D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69,975,013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을 C,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이 공탁되었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C, D에게 양도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지현

1

【별 지】

제 1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보령시 갑종지 149㎡
2. 충청남도 보령시 갑종지 106㎡
3. 충청남도 보령시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수리점 98.94㎡

-- 이 상 --

제 2 목록

(채권의 표시)

1. 위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통하여 피고가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세입세출의연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69,975,013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 이 상 --

